

## ‘계란’ 위생관리 강화

— 4월 1일부터 ‘계란’ 유통기한 표시, 포장 의무화 시행 —

농림수산물식품부는 포장유통, 도축검사 담당자의 업무량개선,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영업 신설, 위생교육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이 2010. 11. 26자로 개정·시행되면서 닭·오리 고기와 식용란(계란)에 대하여 포장유통을 의무화하는 등 위생관리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.

특히, 위생관리상 통제 없이 유통판매 되어 온 식용란(계란)에 대하여는 오는 4월부터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하여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해 시행된다.

다음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계란의 유통기한 표시 및 포장의무화 시행에 관한 내용을 발췌해 정리한 내용이다.

— 홍보부 —

### ◆ 식용란

1) 표시대상 :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해진 식용란 중 닭의 알(이하 “계란”이라 한다)

2) 표시사항

가)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계란을 포장하는 때에는 최소포장단위에 유통기한, 생산자명, 판매자명 및 소재지, 제품명, 내용량, 기타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.

나) 생산자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계란의 난각에 생산자명을 표시하여야 하며, 산란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“○○년○○월○○일”, “○○.○○.○○”, “○○○○년○○월○○일”, “○○○○.○○.○○.”, “○○월○○일” 또는 “○○.○○.”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최소포장단위에 표시하는 생산자명 뒤에 괄호를 하고 생산자명을 나타내는 기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난각에 생산자명 대신 기호로 표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기호는 [도 3]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.

3) 표시방법

가) 최소포장단위에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·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.

나) 난각에는 법 제5조에 따라 정하여진 검인용·인쇄용 색소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.

다) 표시사항의 활자크기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난각의 활자크기는 6포인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
- 제품명, 내용량 : 12포인트 이상
- 산란일, 유통기한 : 10포인트 이상
- 생산자명, 판매자명 및 소재지, 기타표시사항 : 6포인트 이상

라) 가)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또는 라벨(Label)을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를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.

- 제품포장의 특성상 잉크·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
-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
- 유통기한을 제외한 제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

4) 2)에 따른 세부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.

가) 산란일은 생산자가 계란을 채집한 날을 말한다.

나) 유통기한

- 유통기한은 “○○년○○월○○일까지”, “○○.○○.○○까지”, “○○○○년○○월○○일까지” “○

○○○.○○.○○까지.”, 또는 “○○월○○일까지”  
“○○.○○까지.”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

-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위치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.
- 산란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“산란일로부터 ○○일까지” 또는 “산란일로부터 ○○월까지”로 표시할 수 있다.

다) 생산자명, 판매자명 및 소재지

- 생산자명은 생산농장의 소유자명을 표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생산자명 대신 생산농장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, 생산자명 또는 생산농장명은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다.
- 판매자명 및 소재지는 신고관청에 제출한 식용란 수집판매업의 영업장 명칭 및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.
- 계란 생산자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생산자명을 생략할 수 있다.

라) 제품명

-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명칭으로 표시하여야 하며, 상호·로고 또는 상표 등의 표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- 계란에 함유된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

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명과 그 함량(백분율 또는 중량)을 표시하여야 한다.

- 제품명에는 다음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① 소비자를 오도·혼동시키는 표현
- ②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허위·과대의 표시·광고에 해당하는 표현

마) 내용량은 개수로 표시하고 중량을 괄호 안에 표시하여야 한다.

바) 기타표시사항

- 제품의 품질유지에 필요한 보존방법 및 보존온도를 표시하여야 한다.
- “구입 후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”라는 내용의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.

◆ 알가공품

살균여부에 따라 “멸균제품”, “살균제품”, 또는 “비살균제품”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.

알가공품 중 냉장 비살균제품의 제조연월일 표시는 “○○월○○일○○시”, “○○.○○.○○:○○”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유통기한은 “○○월○○일○○시까지”, “○○.○○.○○:○○까지”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(신설).

[도 3](신설)

## 계란 난각의 생산자명 기호 표시 방법

1. 생산자명의 기호 표시는 다음에 따른다.

가. 시·도를 구분하는 숫자(숫자 2자리)와 함께 생산자명의 영문약자(영문 3자리)를 포함하여 총 5자리로 표시하여야 한다.

예) 서울 소재 홍길동 : 01HGD

나. 시·도별 부호

| 시·도   | 부호 | 시·도   | 부호 | 시·도   | 부호 | 시·도     | 부호 |
|-------|----|-------|----|-------|----|---------|----|
| 서울특별시 | 01 | 광주광역시 | 05 | 강 원 도 | 09 | 전라남도    | 13 |
| 부산광역시 | 02 | 대전광역시 | 06 | 충청북도  | 10 | 경상북도    | 14 |
| 대구광역시 | 03 | 울산광역시 | 07 | 충청남도  | 11 | 경상남도    | 15 |
| 인천광역시 | 04 | 경 기 도 | 08 | 전라북도  | 12 | 제주특별자치도 | 16 |